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식품산업진흥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 제 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제18532호('21.11.30. 개정, '22.12.1. 시행) 및 제18883호('22.6.10. 개정, '22.12.11. 시행)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의 세부기준 마련(안 제24조의2 제6항 신설 및 [별표 2] 신설, 종전의 [별표 2]는 [별표 3]으로 수정)
- 나.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근거 마련(안 제24조의제7항(종전의 제5항) 개정)
- 다. 식품명인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 추가(안 제39조제1항 신설 및 [별표 3](종전의 별표2) 개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생략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타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제품”을 “식품”으로 한다.

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식품수출지원기관(이하 “식품수출지원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제24조의2제2항 중 “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식품수출 지원기관(이하 “식품수출 지원기관”이라 한다)”을 “식품수출지원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“식품수출 지원기관”을 각각 “식품수출지원기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,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, 제5항 및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한”을 “식품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식품수출 지원기관”을 “식품수출지원기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(중전의 제7항) 중 “제6항”을 “제7항”으로, “식품수출 지원기관”을 “식품수출지원기관”으로, “운영”을 “지정취소, 운영”으로 한다.

⑥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

별표 2와 같다.

제39조제1항제2호 중 “제품”을 “식품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

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, 같은 표(종전의 별표 2)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38조 제2항제1호	150만원	250만원	300만원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

별표 3(종전의 별표 2) 제2호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제2항”을 “제2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법 제25조제1호의6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하는 경우	법 제38조 제2항제3호	150만원	250만원	300만원
--	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

별표 3(종전의 별표 2) 제2호사목(종전의 바목), 아목(종전의 사목), 자목(종전의 아목)으로 한다.

■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[별표 2]

식품수출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(제24조의2제5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거 법조문	위반횟수별 처분기준	
		1차 위반	2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17조의3 제4항제1호	지정취소	
나.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	법 제17조의3 제4항제2호	시정명령	지정취소
다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		시정명령	지정취소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)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<u>제품</u> 의 제조·가공·조리 및 판매와 기능 전수에 관한 활동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	제21조(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식품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4조의2(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) ① <u>법 제17조의3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”이란 식품관련 연구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기관을 말한다.</u>	제24조의2(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) ① <u>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식품수출 지원기관(이하 “식품수출지원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</u>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<u>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식품수출 지원기관(이하 “식품수출 지원기관”이라 한다)</u> 을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지정 신청 기간 및 그 밖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	② ----- <u>식품수출 지원기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하여야 한다.

③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연구기관 중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⑥ 식품수출 지원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사업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

-----.

③ 식품수출지원기관-----

--.

④ -----

----- 식

품수출지원기관-----

⑦ ----- 식품수출

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

소한 -----

-----.

⑥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식

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

은 별표 2와 같다.

⑤ 식품수출지원기관-----

-----.

⑧ ----- 제7항-----

한 사항 외에 <u>식품수출 지원기관</u>의 지정 및 <u>운영</u>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 제39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. 1. (생 략) 2. 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 식품명인 <u>제품</u>의 사후관리 3. (생 략) 4. (생 략) 5. ~ 6. (생 략) <u><신 설></u> ② ~ ⑪ (생 략)	----- <u>식품수출지원기관</u>----- ----- <u>지정취소, 운영</u> ----- -----. 제39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<u>식품</u>----- 3. (현행과 같음)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 6. ~ 7. (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) 4. <u>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</u> ② ~ ⑪ (현행과 같음)
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	
연 락 처	(044) 201 - 2172
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	
연 락 처	(044) 201 - 2134